

『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

나. 제안이유

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,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7조)

-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서문화진흥법」 , 「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」 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
- 구미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, 제정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